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2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정춘생 · 강경숙
김재원 · 장경태 · 김선민
한창민 · 차규근 · 박상혁
김준형 · 이해민 · 박은정
백선희 · 서왕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·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검찰청법」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

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소청법안」(의안번호 제3354호),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사절차법안」(의안번호 제3348호) 및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355호),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중대범죄수사청법안」(의안번호 제33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제1항 중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”를 “관할 수사기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”를 각각 “관할 수사기관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5조(압수물건의 인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</u> 인계하여야 한다.	제125조(압수물건의 인계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 <u>관할 수사기관에</u> ----- -----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</u> 보관증을 인계하고,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</u>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관할 수사</u> <u>기관에</u> ----- ----- --- <u>관할 수사기관에</u> ----- ----- -----.